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2016년 4월 pp.65~100
한국세무학회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전규안**

<요 약>

세무대리인은 그동안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도와주고 과세당국의 징수업무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고객유치 경쟁을 위한 탈세행위의 공조·조장, 금품수수 등의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하였다. 먼저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외국의 세무사 제도를 검토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의 금품수수·중개·횡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처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세무사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연장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고, 성실신고확인제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이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발생 시 국선세무대리인 참여를 감경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노력방안으로서 세무대리인 협회들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정 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공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에 대하여 입법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세무대리인,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

* 본 논문은 “2015 국제행정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kajeon@ssu.ac.kr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3일 1차수정일 2016년 1월 14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22일

I. 서 론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자로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으나, 『세무사법』의 개정(2012년 1월 26일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세무대리’가 포함되므로 공인회계사도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따라서 실제로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자격사는 세무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세무대리인’으로 칭하기로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이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세무사법』 제1조의2). 구체적으로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서 등에 대한 기명날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성실 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의무,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 세무사로서 등록하기 전과 등록 후의 교육 의무, 업무와 관련한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의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의무 등을 부담한다.¹⁾²⁾ 세무사는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의무 등을 부담한다(『세무사법』 제11조, 제12조의2).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세무사법』 제12조의4 제2항).

세무대리인이 역할 및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첫째, 세무대리인이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1)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제9조부터 제16조의2) 참조.

2)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등). 이와 같이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제재를 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 행정벌이다. 행정벌은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뉘며, 양자의 구분은 처벌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벌칙은 행정형벌에 해당하며 징계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변혜정(2014) 참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경우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명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세무대리인이 의뢰인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거나, 위증을 시킨 경우에는 「형법」 및 「세무사법」에 정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세무대리인은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계약인 위임관계이므로 세무대리인이 의뢰인과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세무대리위임 계약을 체결한 세무대리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여 세금신고를 잘못된 경우에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한다.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내부정보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경쟁상대인 다른 회사에게 고객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동안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성실납세 지원에 긍정적 기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납세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납세자의 탈세를 돕기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를 도와서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단순히 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을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함께 성실납세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세무대리인의 이러한 역할은 납세자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세무대리인의 특징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일부 전문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세무대리인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 본래의 역할 및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납세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납세자의 탈세를 돕기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근절하고, 세무대리인이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에 관한 연구(박주영 외 2014 ; 김한미 · 심태섭 2015 ; 나종희 2013 ; 김정호 2013 ; 김영락 2014 ; 김진환 · 서성호

2012 ; 김광윤 · 정규연 2012 ; 구재이 2015)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심태섭 2008 ; 홍정화 · 고병숙 2008 ; 최지광 · 이영한 2011), 세무대리인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김병일 2011), 세무대리인의 이용목적에 관한 연구(주명희 · 심태섭 2007)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 조세전문가이면서 세정의 협력자로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및 과세당국과의 상호협력 및 세무대리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도모하고 세무대리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공적 조세전문가이면서 세정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세무대리인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외국의 세무사 제도를 검토하고 제Ⅴ장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공헌점을 제시한다.

Ⅱ. 우리나라 세무대리인의 현황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세무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말을 기준으로 세무사는 10,668명이고, 공인회계사는 10,787명으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변호사는 2,592명이다.

〈표 1〉 세무대리인 현황³⁾

(단위 : 명)

연 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합 계
2005년	6,622	6,447	515	13,584
2006년	7,014	6,819	549	14,382
2007년	7,424	7,221	586	15,231
2008년	7,798	8,030	620	16,448
2009년	8,235	8,876	2,566	19,677
2015년 6월말	10,668	10,787	2,592	24,047

주) 2005년~2009년 : 국세통계연보, 2015년 6월말 : 국세청 자료

3) <표 1>에서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를 말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도와주고 과세당국의 징수업무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납세자들의 탈세를 도와주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및 「행정법」상의 책임이 부과된다.

전문자격사에 대한 징계는 전문자격사가 아닌 자가 전문자격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문자격사에게 업무의 독점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문자격사가 자신의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상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징계는 국가행정의 원활한 집행은 물론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변혜정(2014)).

2010년 이후 세무사 징계실태는 <표 2>와 같이 증가추세에 있다.

<표 2> 2010년 이후 세무사 징계 현황

(단위 : 명)

<Panel A> 징계사유별 현황						
구 분	성실의무 위반	탈세상당 등의 금지	사무직원 관리소홀	명의대여 등의 금지	비밀엄수 위반	합 계
2010년	8	2				10
2011년	35	12	7		1	55
2012년	8	1		2		11
2013년	34	1	1	3		39
2014년 7월	30	1	2			33
합 계	115	17	10	5	1	148

<Panel B> 징계유형별 현황							
구 분	등록취소	등록거부	직무정지	과태료	건축	관련협회 자체징계	총합계
2010년			4	6			10
2011년	2	2	11	37	3		55
2012년			3	8			11
2013년		1	18	16	2	2	39
2014년 7월		1	12	19	1		33
총합계	2	4	48	86	6	2	148

주) 자료원 : 감사원(2015, 감사결과보고서 :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먼저, 징계사유별로 보면 총 148건 중 성실의무 위반이 115건(77.7%)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탈세상담 등의 금지(17건, 11.5%), 사무직원관리소홀(10건, 6.8%), 명의대여 등의 금지(5건, 3.4%), 비밀엄수(1건, 0.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총 148건 중 과태료 처분이 86건(58.1%)으로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무정지가 48건(32.4%)으로서 두 번째로 많다. 그 외에 견책(6건, 4.1%), 등록거부(4건, 2.7%), 등록취소(2건, 1.4%)와 관련협회 자체징계(2건, 1.4%)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 검토

전문자격사는 높은 도덕성을 근간으로 독특한 직업윤리와 공공성이 요구되어지므로 전문자격사 업무에 대한 일정한 행위규범과 지침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먼저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 「세무사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과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1. 세무사법

가. 세무사의 역할과 의무

세무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제9조부터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세무사는 세무관련 서류의 관계 기관 제출시 서류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비밀엄수 의무, 성실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의무,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가 있다. 또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으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된다.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고,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나. 세무사 결격사유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등

록을 할 수 없으며,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다. 세무사 벌칙 관련 규정

세무사에 대한 벌칙은 『세무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또는 (2) 비밀엄수의무(세무법인과 외국 세무자문사 포함)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세무사법』 제22조(벌칙) 제1항).

둘째, (1)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세무법인과 외국세무자문사 포함)를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2)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5)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세무사법』 제22조의2(벌칙)).

셋째,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2)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경업(競業)을 한 자, (5)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등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세무사법』 제23조(벌칙)).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벌칙), 제22조의2(벌칙) 제1호·제2호 또는 제23조(벌칙)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세무사법』 제24조(양벌규정)).

라. 세무사 징계 관련 규정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이 있다(『세무사법』 제17조(징계) 제2항).

기획재정부장은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경우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명할 수 있다(『세무사법』 제17조 제1항).⁴⁾ 따라서

4)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회의

우리나라에서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시 자주 인용되는 법 규정은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와 제12조(성실의무)⁵⁾, 제12조의2(탈세상당 등의 금지)이다. 「세무사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열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징계청구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및 소속협회장이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⁶⁾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1. 관보에 공고된 징계 의결 내용과 2. 해당 세무사의 성명·사무소명·주소”를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현재는 세제실장이 담당),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3)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4)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으로 구성된다. 위 ‘(3)~(6)’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세무사법시행령」 제16조).

5)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6)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020호)

제19조(징계요구)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협회에 통보하여 소속협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내부행정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에 대한 징계 결정시 활용되고 있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통해 양정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징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징계결정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기여하고 있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서는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허위확인과 성실신고의 불성실, 허위확인의 경우에는 허위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징계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장·부실기장 세무조정과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징계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허위확인금액보다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더 엄하게 징계하고 있다.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허위확인 과 성실신고의 불성실, 허위확인 중에서는 성실신고의 불성실, 허위확인을 더 엄하게 징계하고 있으며, 무기장·부실기장 세무조정과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 중에서는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을 더 엄하게 징계하고 있다.

〈표 3〉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징계 관련 주요내용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허위확인 (허위확인금액 기준)	징계내용	성실신고의 불성실, 허위확인*1 (허위확인금액 기준)	징계내용
20억원 이상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5억원 이상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5억원 이상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억원 이상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억원 미만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억원 미만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무기장·부실기장 세무조정 (탈루세액 기준)	징계내용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 (탈루세액 기준)	징계내용
3억원 이상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5,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1년~등록취소
5,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2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0만원 미만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미만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원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항

*1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허위확인금액에서 특이사항을 제외)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세무사법』 제12조의2). 세무사가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징계 내용은 없으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⁷⁾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세무사징계양정규정 :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 (탈루세액 기준)	징계내용
5,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1년~등록취소
1,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미만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 자료원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3항

세무사가 금품수수·중개·횡령을 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와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세무사가 금품수수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징계 내용은 없으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세무사가 금품수수·중개·횡령을 한 경우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세무사징계양정규정 : 금품수수·중개·횡령

금품수수·중개·횡령 (금액 기준)	징계내용
3,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2년 또는 등록취소
1,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2년
1,000만원 미만	직무정지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 자료원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7)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내부행정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양정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도 유사한 목적의 규정이 존재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도 유사한 목적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대하여 제9조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⁹⁾

3. 소득세법 : 성실신고확인제

가. 성실신고확인제의 의의 및 현황

성실신고확인제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세무사 등(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제도이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즉,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자료 참조).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는 성실납세풍토의 조성과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2011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12년 신고 시부터 시행) 중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표 6>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다. 2013년까지는 기준수입금액이 농업·임업 및 어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 임대업 등이 각각 30억원, 15억원, 7.5억원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20억원, 10억원, 5억원으로 낮아져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증가하였다.

8)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 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이상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주) 자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1년부터 적용된 성실신고확인 신고자는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67,937명으로서 전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1년에는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1.8%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1.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2011년에는 69,55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65,27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67,937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연도	외부조정 신고자	자기조정 신고자	성실납 세방식 신고자	성실신고 확인신고자	간편장부 신고자	기준경비 율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비사업자 신고자	합계
2009	786,486 (21.9%)	109,541 (3.1%)	1,707 (0.0%)	0 (0.0%)	967,545 (27.0%)	420,279 (11.7%)	1,107,385 (30.9%)	191,489 (5.3%)	3,584,432 (100.0%)
2010	874,057 (23.1%)	122,382 (3.2%)	1,098 (0.0%)	0 (0.0%)	1,148,707 (30.3%)	449,870 (11.9%)	933,431 (24.7%)	255,703 (6.8%)	3,785,248 (100.0%)
2011	890,436 (22.5%)	139,365 (3.5%)	566 (0.0%)	69,556 (1.8%)	1,208,464 (30.5%)	452,222 (11.4%)	941,993 (23.8%)	254,100 (6.4%)	3,956,702 (100.0%)
2012	974,128 (22.4%)	156,739 (3.6%)	372 (0.0%)	65,275 (1.5%)	1,253,220 (28.8%)	468,967 (10.8%)	984,705 (22.6%)	449,523 (10.3%)	4,352,929 (100.0%)
2013	1,023,707 (22.4%)	168,260 (3.7%)	195 (0.0%)	67,937 (1.5%)	1,361,254 (29.8%)	452,540 (9.9%)	1,031,614 (22.6%)	459,175 (10.1%)	4,564,682 (100.0%)

주) 자료원 : 국세통계연보, 단위 : 명, ()안은 차지하는 비율

성실신고확인서는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1) 성실신고확인서 표지와 (2) <첨부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3) <첨부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4) <첨부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으로 구성된다. “<첨부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징계대상인 “허위확인금액”에서 제외되며(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첨부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첨부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이다.

〈표 8〉 성실신고확인서의 구성

성실신고확인서 표지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3. 확인내용
<첨부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1. 사업장 현황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3. 수입금액 검토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7. 차량운영현황(업무용에 한함)
	8.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
<첨부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현황, 수입금액, 적격증빙비용,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지급수수료, 성실신고확인자 종합 의견
<첨부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수입금액확인(공통, 업종별)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서는 세무사회(본회와 지방세무사회)에 의한 감리(일반감리와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2015년 5월 11일 최종 개정)” 참조).¹⁰⁾ 감리를 한 경우에는 감리결과에 따라 “적정”, “주의”, “시정요구” 중에서 판정하

10) 참고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감리와 품질관리감리가 시행되고 있다(「외감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며,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관련 위반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나. 성실신고확인제의 효익과 비용

(1) 납세자 입장에서의 효익과 비용

납세자 입장에서의 성실신고확인제의 효익을 알아보면, 납세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되고,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

납세자 입장에서의 성실신고확인제의 비용을 알아보면,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가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산입 이외에도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인정되나 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¹¹⁾

(2) 세무대리인 입장에서의 효익과 비용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이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¹²⁾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제도이며,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을 하게 되면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받으므로 수입증대효과가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허위확인금액에서 특이사항을 제외)에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1)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즉,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2)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에서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임을 확인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과와 선행연구 및 문제점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으로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 선행 논문 및 국세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된다.¹³⁾ 그러나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과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과가 있다는 연구(박주영 외 2014, 김한미·심태섭 2015)¹⁴⁾와 설문조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나종희 2013, 김정호 2013, 김영락 2014 등)가 존재한다.¹⁵⁾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진환과 서성호(2012)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으며, 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후 자발적 검증 및 교차검증제도로 전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정부부담 및 조세부담 경감제도 도입, 성실신고확인자의 책임한계 및 검증권한 부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김광윤·정규언(2012)은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자에서 배제하고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김광윤·정규언(2012)

13) 전병욱(2015)에 의하면 2010년에 외부조정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의 2010년 소득률은 7.7%로 동일하였으나, 2013년에는 외부조정대상자의 소득률은 8.4%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성실신고확인자의 소득률은 9.4%로서 대폭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제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가 실시된 2011년에 외부조정대상자의 소득률은 7.7%로서 2010년과 동일한 반면에 성실신고확인자의 소득률은 8.5%로서 0.8%p 급격히 증가하였다.

14) 박주영 외(2014)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사업소득금액/총자산)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음을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추가분석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사업자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한미·심태섭(2015)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실신고확인제 실시 이후에 유효세율이 증가함을 보고하여 성실신고확인제가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15) 임재철과 홍정화(2015)는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보상 여부는 소득세부담수준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16) 외부세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조성훈(2008) 등)과 이의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김웅희·최숙 2009, 이강오·명영준 2009, 전병욱 2012 등)이 존재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김웅희·최숙(2009)은 이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분담 또는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기업입장에서 자기세무조정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 주장은 김진환·서성호(2012)의 교차검증제도와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다. 김정호(2013)는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으로 납세의무자 권익의 침해문제, 외부조정업무와의 중복문제, 납세협력 비용문제, 세무대리인의 책임한계 및 검증권한문제 등을 주장하였다. 구재이(2015)는 성실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한계와 성실신고확인을 해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중복 세무간섭의 문제,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납세협력비용화, 성실신고확인자의 책임한계 미흡, 회계·신고관련 정보청구·열람권 없이 성실성 확인 곤란 등을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으로 주장하였다.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¹⁷⁾ 관계장부등의 열람권이 없는 상황에서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¹⁸⁾에 의해 관계장부등의 열람권이 존재하지만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는 그러한 장부열람권이 없으므로 실제 장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¹⁹⁾ 예를 들어 앞의 <표 8>에서 “<첨부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중 “8.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은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항목들의 업무관경비(가사관련경비 등)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와 “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자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납세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성실신고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17) 본 연구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 방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18) 「공인회계사법」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감법」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謄寫)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9)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국세청에서도 성실신고확인시 중점확인 사항으로 가공경비 확인과 업무무관경비 확인을 제시하고 있다(국세청 보도자료(2015년 4월 28일b) 참조).

IV. 외국의 세무사 제도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무사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세무사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외국의 세무사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므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무사 결격사유와 징계관련 내용(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 징계절차 등) 등을 위주로 알아본다.²⁰⁾

1. 일본 세리사(税理士) 제도

가. 세리사 결격사유

일본 「세리사법」 제4조에서는 세리사가 될 수 없는 결격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세리사 업무가 정지된 후 세리사 재등록기간과 관련해서는 3년 또는 5년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 또는 「세리사법」의 규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세리사가 될 수 없다(「세리사법」 제4조 제4호). 또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자로서,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 나머지 사유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리사가 될 수 없다(「세리사법」 제4조 제5호부터 제10호).

나. 세리사 징계 관련 규정과 현황

일본에서 세리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계고(戒告),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 세리사업무의 금지로 나누어진다.²¹⁾ 일본에서 세리사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리사는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상담에 응하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²²⁾ 세리사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20) 외국의 세무사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영선 외(2009), 김완석·이종영(1994), 박명호 외(2007), 안경봉 외(2010), 일본세리사회연합회(www.nichizeiren.or.jp), 독일연방세무사협회(www.bstbk.de)를 참고하기 바란다.

21) 일본 「세리사법」 제44조(징계의 종류) 세리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음의 세 종류로 한다.

1. 계고(戒告)
2.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
3. 세리사업무의 금지

22) 제36조(탈세상담 등의 금지) 세리사는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상담에 응하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지 또는 세리사업무의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세리사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고 또는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²³⁾

둘째, 탈세상담 등의 금지와 관련해서 일본 「세리사법」 벌칙조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²⁴⁾

셋째, 채무대신은 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리사가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²⁵⁾의 규정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허위의 기재한 때 또는 「세리사법」 또는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계고(戒告),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 세리사업무의 금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넷째, 지방공공단체의 장이나 세리사회는 세리사에 대하여 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의 징계나 일반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대신에 대하여 당해 세리사의 성명 및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무소소재지 그리고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채무대신에 대하여 당해 세리사의 성명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대신은 세리사의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국세심의회에 자문하여 그 의결에 근거하여 하여야 하며, 세리사의 징계처분을 하는 때는 그 이유를 부기한 서면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세리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²⁶⁾ 즉, 일본에서의 세리사 징계

23) 제45조 (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의 징계) ① 채무대신은 세리사가 고의로 진정한 사실에 반하여 세무대리 또는 세무서류의 작성을 한 때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 또는 세리사업무의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채무대신은 세리사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는 계고 또는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4) 제58조 제36조(제48조의16 또는 제5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제33조의2 (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

①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은 「국세통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제기하는 신고납세방식 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1호에 제기하는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의 방법에 의한 조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당해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계산, 정리 또는 상담에 응한 사항을 채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②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은 전항에 규정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로서 타인이 작성한 것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심사한 경우에 당해 신고서가 당해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심사한 사항 및 당해 신고서가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다는 뜻을 채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26) 제47조 (징계의 절차 등) ①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세리사에게 지방세에 관하여 전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채무대신에 대하여 당해 세리사의 성명 및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무소소재지 그리고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세리사회는 그 회원에 관하여 전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채무대신에 대하여 당해 회원의 성명 및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권자는 채무대신이다. 채무대신은 징계처분을 한 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²⁷⁾

2. 독일 세무사 제도

가. 세무사 결격사유

독일 「세무사법」(Steuerberatungsgesetz(StBerG), 2015년 7월 최종개정)에서는 독일의 세무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거나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공직 복무자질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면허가 거부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세무사법」 제40조 제2항, 제3항).

세무사(steuerberater)나 세무대리사(steuerbevollmächtigte)는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세무사법」 제48조 제1항).

나. 세무사 징계 관련 규정과 현황

독일에서 세리사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협회 회원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이 경미하여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세무사협회 회원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81조 제1항, 제2항).

둘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직업재판절차에 의하여 처벌(Berufsgerichtliche Maßnahmen)하고 있다(「세무사법」 제89조 제1항).²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 외의 행위가 개개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직무의 수행 또는 직업의 신망을 위하여 필요한 존경과 신뢰를 증대한 방법으로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 행위를 직업재판(Berufsgerichtsbarkeit)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로 본다(「세무사법」 제89조 제2항).

③ 누구든지 세리사에 관하여 전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채무대신에 대하여 당해 세리사의 성명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채무대신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의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국세심의회에 자문하여 그 의결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⑤ 채무대신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의 징계처분을 하는 때는 그 이유를 부기한 서면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세리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 제48조 (징계처분의 공고) 채무대신은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8) 독일에서 직업재판은 3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심은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서 담당하고, 2심은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서 담당하며, 3심은 연방대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서 담당한다.

셋째, 직업재판절차는 검사가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의 종류는 (1) 경고(Warnung), (2) 견책(Verweis), (3) 50,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geldbuße), (4) 1년~5년까지의 취업금지(Berufsverbot für die Dauer von einem bis zu fünf Jahren), (5) 자격 박탈(Ausschließung aus dem Beruf) 등이 있다(『세무사법』 제90조).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은 견책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와 일본 및 독일의 세무사 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 및 독일의 세무사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무사, 일본은 세리사(税理士), 독일은 세무사(steuerberater)와 세무대리사(steuerbevollmächtigte)라는 명칭으로 세무대리인이라는 별도의 자격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둘째, 세무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무대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가 조세소송과 조세형사소송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모두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조세형사소송은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⁹⁾

셋째, 세무사 재등록기간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경우에 우리나라 『세무사법』에서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세무사 재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 세무사 재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8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세무사법』의 재등록 제한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넷째,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시 제재와 관련하여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서는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직무정지 1년~등록취소”까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세리사가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 또는 세리사업무의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계고 또는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벌칙조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29) 박명호 외(2007) p.114 참조.

V.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되, 우리나라 세무대리 환경의 영향 또는 관련 규정의 모호나 미비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실하게 업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세무대리인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여 공적 조세전문가이면서 세정의 협력자로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관련 개선방안

가.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 관련 현행 규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금품수수·중개·횡령 세무사에 대한 처벌은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최고 직무정지 2년 또는 등록취소로서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세무사가 금품수수·중개·횡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및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를 가하고 있으나, 「세무사법」에 형사처벌의 대상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세무사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상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징역형을 부과하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세무사의 금품수수·중개·횡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처럼 형사처벌을 도입하여야 한다. 금품수수·중개·횡령의 경우에는 과실이 아니므로 고의나 과실(중과실 또는 경과실)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내부행정규칙인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세무사법」 제22조를 수정하거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무대리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품을 제공하는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현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강력한 처벌³⁰⁾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혁신³¹⁾을 하고 있다. 인사 혁신처에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2015.8.19)하여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향후에도 금품을 제공하는 세무대리인과 금품을 받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표 9〉 전문자격사별 금품수수·중개·횡령에 대한 징계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① 금액 3,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2년 또는 등록취소 ② 1,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③ 1,000만원 미만 : 직무정지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 가능.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 가능.

나. 세무사 재등록 제한기간의 연장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후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현행 재등록 제한기간은 다른 전문자격사나 외국에 비해 짧은 수준이다. 현행 「세무사법」 제4조에 의하면 「세무사법」 등에 따라 제명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세무사법」의 재등록 제한기간은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하여 짧은 편이다. 예를 들어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의 경우에 「세무사법」에서는 3년 후 세무사 등록을 할

30) 현재 금품 수수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5년(「세무사법」에서는 3년)이며, 국세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 시 해임처분 이상의 징계처분 등을 하고 있다.

31) 국세청 보도자료(2015년 7월 6일,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 참조.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의하면 5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무사법」에서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세무사 재등록을 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의하면 5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5년, 독일의 경우에는 8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 「세무사법」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세무사법」의 재등록 제한기간은 짧은 편이다.

〈표 10〉 전문자격사의 결격사유별 재등록 제한기간*1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각 법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세무사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나 일본 수준으로 연장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전문자격사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전문자격사 별로 일부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품수수·중개·횡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자격사별로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³²⁾

2.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개선방안

가.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 명확화

먼저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1) 성실신고확인제를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성격으로 볼 것인지, 또는 (2) 「외감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유사한 독립된 검증 수준으로 볼 것인지, 또는 (3)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신고 전(前) 사전 확인 수준(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보는 수준)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성격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선정방법의 개선, 성실신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의 주체,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감리 강화 문제,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의 권한 강화 문제, 신고 후 사후적인 세무조사와의 중복 문제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³³⁾ 구재이(2015)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간편조사(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를 「외감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유사한 독립된 검증수준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외부감사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장대리를 하거나 외부세무조정을 한 경우에는 독립된 제3자인 다른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32)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는 5년이 안된 자”를 신설함으로써 세무사 재등록 제한기간을 종전의 3년 규정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이러한 세법개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구체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선정방법(자율선정방법 또는 강제배정방법), 성실신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의 주체(납세자(세액공제 등 허용) 또는 국가 부담),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감리(일반감리와 특별감리의 강화),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의 권한(세무대리인의 실질 조사권 부여), 사전적인 기장대리 및 외부세무조정과의 중복문제, 신고 후 사후적인 세무조사와의 중복 문제, 불성실 또는 허위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징계 강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⁴⁾ 김진환·서성호(2012)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신고 전에 회계 및 세무를 대행하는 동일한 조세전문가가 확인을 하는 사전적인 자기 확인제도가 아니라, 소득세신고 후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다른 조세전문가가 성실성을 검증하는 사후적인 교차검증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교차검증제도”라 함은 김광윤·정규언(2012)과 같이 성실신고확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외감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유사한 독립된 검증수준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를 납세자의 신고 전(前)에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안으로 제시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성실신고의 불성실, 허위확인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져야 하고, 이러한 수준에 맞게 성실신고확인 대상도 조정되어야 한다.

나. 성실신고확인자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성실신고확인제가 성실납세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된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당국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이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가 세무대리인의 업무영역을 확대시켜주는 쪽으로만 진행되어서도 안 되지만 세무대리인의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 납세자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이 추가적인 규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납세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 증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개선방안 “가.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 명확화”에서의 세 가지 안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의 권한과 책임을 달리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 “성실신고확인기준(가칭)”의 명확화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정해진 “성실신고확인기준”(가칭)³⁵⁾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가 발견된 경우에도 면책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³⁶⁾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해서는 징계수준을 강화하되,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

34) 이와 관련하여 김광윤·정규언(2012)은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자에서 배제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5) 본 연구에서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시의 “회계감사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성실신고확인에서는 “성실신고확인기준”(가칭)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경봉·이동식(2012)은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가칭)을 제안하였다.

36) 세무대리인이 성실하게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실신고확인서』가 될

지 못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감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참조할 수 있다.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시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회사에서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은 주식회사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맡은 감사인이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는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라. 성실신고확인 절차 개선

성실신고확인서의 구체적인 확인사항과 성실신고확인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계장부등의 열람권이 없는 성실신고확인자가 여러 항목을 철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성실신고확인자가 가공경비 등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도 이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되지만, 주어진 기간에 성실신고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성실신고확인을 세무조사의 위탁으로 보면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7월 31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겹쳐서 연장의 효력이 적으므로 8월 31일로 연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6월 중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가급적 자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시간을 준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

2011년에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성실신고 허위확인이나 불성실확인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성실신고의 불성실, 허위확인”의 경우는 허위확인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최대 직무정지 2년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허위확인금액을 좀 더 세분화하고 징계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징계수준을 높이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들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 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지(본문)와 <첨부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첨부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첨부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가 세무대리인의 제재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강화 방안

가.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 강화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³⁷⁾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의 창업단계와 사업단계, 폐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와 유사한 포인트 제도를 신설하여 활동 내용에 따라 우대³⁸⁾하거나 실비변상적 비용을 상회하는 상담비용 제공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 협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1인당 일정시간 이상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을 포함한 국세청 지원 활동을 교육·연수 이수시간에 포함시키고, 우수회원에게 대한 세무대리인 협회 고유의 보상 실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무서 내방민원 축소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납세자의 무료 신고대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신고 대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건당 금액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³⁹⁾

나.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활성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발생 시 감경사유로 추가하는 방안 또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 후에 징계사유 발생시 경감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⁴⁰⁾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37) 영세납세자지원단은 2009년 5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다. 대상이 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이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8) 포인트에 따라 포상 추천, 각종 위원회 위촉 우대,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9) 소득세의 경우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신고건당 2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신고건당 1만원이며, 한도액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세무사는 400만원이고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1,000만원이다.

40) 여기서 영세납세자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를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인 자,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

서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무보수 지식기부의 형태이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동 시행령 제48조의2).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3조에서 징계를 경감하는 사유로는 세무업무에 표창경력이 있는 경우⁴¹⁾와 사안이 경미 또는 불가피하고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⁴²⁾이다. (1)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한 경우를 추가하거나 (2)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적극 참여한 경우엔 표창을 하는 방안으로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부여시 무보수 지식기부의 본래 취지를 손상시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제시한 방안은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적극 참여한 세무대리인을 표창한 후에 혜택을 주는 방안은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무보수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노력방안

가.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자정노력

세무대리인과 관련있는 전문자격사 협회들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정 노력을 통해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대다수의 세무대리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일부 세무대리인의 위법행위는 전체 세무대리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 협회들은 소속 회원을 보호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세무대리인 전체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나. 세무대리인 협회의 회원 및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에서 세무대리 종사직원들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126 콜센터 상담전화 중 세무대리업계 종사직원의 전화문의가 많아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에서 세무대리 종사직원들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세무대리업계 종사직원의 국세청

의무자는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한다.

41)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이상의 표창경력의 경우에는 양형의 2분의 1 범위 내 경감하고 국세청장 표창 또는 이와 유사한 표창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4분의 1 범위 내 경감한다.

42) 이 경우에는 양형의 2분의 1범위 내 경감한다.

126 콜센터 상담수요를 근본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126 콜센터 상담전화를 납세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대국민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무대리인 협회 상담창구 확대

국세청 126 콜센터의 상담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세무대리인 협회에서 자체 무료상담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네이버 지식in” 코너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대리인 협회가 대국민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담창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5. 세무대리 환경 개선방안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수준의 납세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약자(“乙”)의 입장에서 세무대리 및 외부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하게 된다.⁴³⁾

세무대리인에게 국세청 수준의 정보를 확보하여 세무대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납세자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에 비해 정보가 적은 세무대리인에게 사후적인 세무조사결과를 통해 국세청에 준하는 세무대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업무수행시 납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 관련 증빙을 늦게 제출하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장부열람권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증빙을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가. 납세자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납세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⁴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간의 정보

43) 이러한 관계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회사와 감사인(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관계 및 신용평가사 피평가회사와 신용평가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세무대리인과 감사인, 신용평가사는 모두 약자(“乙”)의 입장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도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44) 국세청에서도 2015년을 국세청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

공유는 효과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시 필요한 각종 신고관련 자료의 확대 제공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

나. 조세포탈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납세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 등을 강요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납세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먼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시 불성실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요구하는 납세자를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납세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후적인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 등을 강요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고의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밝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납세자에 의한 적극적인 불성실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의 강요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이 납세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를 적극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⁴⁵⁾”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 등을 강요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고의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4항에 포함시켜 가중 처벌하는 방법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처벌

량을 집중하여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개별분석자료(40종)를 53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고, 소득물저조자명단을 수입대리인에게 별도 제공하였다(국세청 보도자료(2015년 4월 28일a) 참조).

45)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을 강화할 수 있다.

다. 세무조사 후 서면확인서 징구

세무조사 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징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세무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납세자와 세무조사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했음을 나타내는 서면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의 경우에 감사인은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다.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 후가 되어서는 안 된다(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 580 A15).”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영진의 서면진술은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받되, 감사보고서일보다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서면진술이 비록 필요감사증거를 제공하지만, 서면진술이 다루는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진술 그 자체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서면진술을 경영진이 제공했다는 사실이 경영진의 책임완수 또는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수하는 다른 감사증거의 성격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 580 문단 4).” 따라서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진술은 감사증거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경영진이 요청된 서면진술을 변형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 이상의 유의적 이슈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감사인에게 주는 경보(alert)일 수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구두진술보다 서면진술에 대한 요청은, 경영진이 해당 사항들을 더 철저하게 고려하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 580 A1).”

납세자의 탈세사실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에 서면진술을 토대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는 없지만, 서면진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다.

VI. 결 론

세무대리인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그동안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도와주고 과세당국의 징수업무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고객유치 경쟁을 위한 탈세행위의 공조·조장, 금품수수 등의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하게 업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세무대리인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여 공적 조세전문가 이면서 세정의 협력자로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무사법」과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세무사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과의 상호 협력 및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의 경우에 처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무사의 금품수수·중개·횡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처럼 형사처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후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및 일본 수준으로 연장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1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이 예측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를 수행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면책되도록 “성실신고확인기준(가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해서는 징계수준을 강화하되,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는 관계장부등의 열람권이 없음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예 : 가공경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을 하도록 성실신고확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먼저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영세납세자지원단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세무대리인이 “국선세무대리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발생 시 감경사유로 추가하는 방안 또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통해 징계사유 발생 시 경감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 세무대리인의 위법행위는 전체 세무대리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 협회는 소속 회원을 보호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세무대리인 전체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에서 세무대리 종사직원들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세무대리업계 종사직원의 국세청 126 콜센터 상담수요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 협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무료상담 채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수준의 납세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므로 세무대리환경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공개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 등을 강요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납세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납세자와 세무조사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했음을 나타내는 서면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세무사법」에 규정된 탈세상담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벌칙이나 징계의 경우에는 이를 받는 세무대리인이 수용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징계이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수용가능성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세무대리인과의 상호 협력 및 세무대리인의 책임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되, 이 과정에서 억울한 세무대리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세무대리인을 보호하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관점에서 입법이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입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입법취지는 달성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감사원. 2015. “감사결과보고서 :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 운용실태”.
- 고영선 · 김두얼 · 윤경수 · 이시욱 · 정완교. 2009. “전문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KDI.
- 구재이. 2015. “성실신고확인. 세무실무편람(한국세무사고사회)” : 101 - 193.
- 국세청. 2013. 성실신고 확인제 안내(2014년 귀속).
- _____. 2015. “국세청장, 세무대리인 단체와 소통에 나서다 : 국세청-세무대리인, 상호 협력과 투명 세정 다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15년 5월 12일).
- _____. 2015. “올해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 국세청 보도자료(2015년 4월 28일a).
- _____. 2015.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 국세청 보도자료(2015년 7월 6일).
- _____. 201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15년 4월 28일b).
- 김광윤 · 정규언. 2012.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제와 독립성”.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54권 제2호 : 505 - 527.
- 김병일. 2011.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 213 - 243.
- 김영락. 2014.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준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 93 - 121.
- 김완석 · 이종영. 1994.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 김용희 · 최 숙. 2009. “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조세법연구 제15권 제2호 : 385 - 432.
- 김유찬. 2003. “독일 · 일본 · 미국의 세무사관계법령집”. 한국조세연구소.
- 김정호. 201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55권 제1호 : 165 - 188.
- 김진환 · 서성호.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3호 : 285 - 315.
- 김한미 · 심태섭. 2015. “병의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검증”. 한국세무학회 201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나종희. 2013.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세무조정이 세원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독일연방세무사협회. [http : //www.bstbk.de](http://www.bstbk.de).
- 박명호 · 기은선 · 김정아. 2007.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변혜정. 2014. “세무사법령 정비방안”. 기획재정부.
- 심태섭. 2008.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 195 - 222.

- 안경봉 · 이동식.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1호 : 163-198.
- _____. 장재옥 · 신흥균 · 윤태영. 2010.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 한국법 학교수회.
- 이강오 · 명영준. 2009.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연구보고서.
- 일본세리사회연합회. [http : //www.nichizeiren.or.jp/](http://www.nichizeiren.or.jp/).
- 임재철 · 홍정화. 2015.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 285-320.
- 전병욱. 2015.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병욱. 201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 247-277.
- 조성훈. 2008.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의 위헌성 검토”. 국세 2008년 9월호 : 18-22.
- 주명희 · 심태섭. 2007. “세무대리인 이용목적과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4호 : 101-127.
- 최지광 · 이영한. 2011. “납세자의 재무상황과 세무보고성향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비외감기업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 9-48.
- 홍정화 · 고병숙. 2008. “세무행정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 세무대리인의 특성별 영향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 9-43.
- 한국조세연구소. 2008. 일본 세리사법(2008년 번역본).
-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Japan Federation of Zeirishi Associations/JFCPTAA. 2011.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 ACT(Zeirishi Act).

Improv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ax Agent

Kyu-An Jeon*

—〈Abstract〉—

Tax agents have played a more positive role to help the tax liability of a taxpayer and contribute to the task of the tax authorities. However, some tax agents have not played a positive role or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integrity of the tax ordinance to redefine the role of tax agent as a co-workers.

I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ax agents. In this study, improvements for enhan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oposed tax agents are as follows :

First, disciplinary punishment for bribery, tax mediation, and embezzlement is to be raised to punishment level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lawyers. If this amount has material, then criminal penalties shall be introduced such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t” or “Attorney-at-Law Act”.

Second, we establish clearly the nature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and clarif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ax agents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If the tax agents carry out according to “Standards on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tentative name)”, they shall become immune from obligation. Also, we improve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procedures to focus on an essential points.

Third, for the tax service strengthening of tax agents, we enable many tax agents participate in the “Small Taxpayers Support Group” and “Public Tax Agent”. Also when disciplinary reasons occur, we shall add to mitigating reasons if tax agents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Tax Agents”.

Fourth, tax agent associations should strive to improve the tax agent phase through a self-purification efforts aimed at its members. Tax agent association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consulting of tax agent staff, shall strengthen job training to enhance the ability of tax agent staff, and be seeking to activate a free consultation channel for taxpayers.

Fifth,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ational Tax Service shall disclose to the tax agent the information on taxpayers to resolv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ax agent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for tax information for taxpayers. Also taxpayers to induce such as insincere declaration or false declaration or providing inadequate information to the tax agent shall be punished. It should introduce a plan to sign a written statement confirming that an investigation is being faithful to the tax audits for taxpayers and tax agents who participated in the tax audits at the point of completion.

〈Key words〉 Tax Agent, Certified Tax Accountant,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kajeon@ssu.ac.kr